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8
------------	-------

발의연월일 : 2018. 1. 26.

발 의 자 : 강훈식 · 이원욱 · 김현권  
조승래 · 윤후덕 · 김철민  
강병원 · 한정애 · 양승조  
김민기 · 안호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임.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 · 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자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48조의2, 제68조의3,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9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발주자”라 한다)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급 참여 제한을 요청[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요청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공공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도급 참여제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개시되기 7일전까지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되는 자에게 그 제한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⑨ 공공발주자는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보를 받은 공공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이하 “재하수급인”이라 한다) 중에 제25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중 “제34조제1항과”를 “제34조제1항·제8항 및”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 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소액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설업자의 노무관리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5조제6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요청하는 자는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하수급인의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한다.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이하 “현장별 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별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82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묵인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률 제14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 제8호”를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91조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발주자 승인신청의 접수 및 검토

12.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요청 접수, 하도급 참여제한 및 제한내용 게재,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게 제한내용 통보

1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점 관리

제9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묵인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를 “제81조제3호, 제5호의2 또는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4.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칙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발주자”라 한다)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급 참여 제한을 요청[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공공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도급 참여제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되는 자에게 그 제한내용을 통보(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⑨ 공공발주자는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④ (생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 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 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제34조(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소액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건설업자의 노무관리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

<신 설>

<신 설>

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5조제6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을 요청하는 자는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하수급인의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다.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별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이하 “현장별 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신 설>

### ③ ~ ⑤ (생 략)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  
다.

## 1. ~ 10. (생략)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 1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9. (생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신설>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벌점>	10.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벌점
	-----
	-----
	-----
	-----
	-----
	-----
	-----
	-----
	-----
	-----
	-----
	-----
	-----
	-----
	-----
	-----

<p>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4.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법률 제14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u> <u>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u> <u>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u> <u>한 경우</u></p> <p>4. ~ 5. (현행과 같음)</p> <p><u>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u> <u>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u> <u>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u> <u>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u> <u>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u> <u>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u> <u>목인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u> <u>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u> <u>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u> <u>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4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p>
---	---

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u>제6호까지</u> , <u>제8호</u> ,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lt;신설&gt;</u>	1.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8. ~ 13. (생략)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8. ~ 13. (현행과 같음)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6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발주자 승인신청의 접수 및 검토

12.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요  
청 접수, 하도급 참여제한 및  
제한내용 게재,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은 자에게 제한내용  
통보

13.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벌점 관리

제96조(별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

	<p><u>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 목인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 다)</u></p>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9조(과태료) ----- ----- -----. 1. ~ 5.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1. ~ 5. (생략) 6. <u>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목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u>	
7. ~ 10. (생략) 11. <u>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u>	7. ~ 10. (현행과 같음) 11. <u>제81조제3호, 제5호의2 또는 제11호----- ----- ----</u>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벌  
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한 경우